

의안번호	2219544
의 퇴 인	강대식의원
회 답 일	2026.10.1.
추 계 번호	26D31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自筆證書), 녹음(錄音), 공정증서(公正證書), 비밀증서(秘密證書), 구수증서(口授證書)와 디지털증서의 6종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1069조의2(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 신설	유언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의 형태(이하 “디지털증서”라 한다. 이하 같다)로 유언을 작성할 수 있음(제1항)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작성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디지털증서를 법원이 지정하는 전자유언보관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함(제2항) 전자유언보관소에 대한 제출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면전에서 하거나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참여한 상태에서 하여야 함(제3항) 전자유언보관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디지털증서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유언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인증서를 교부함(제4항) 유언자는 언제든지 전자유언보관소에 대하여 디지털증서의 보관 철회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철회신청을 하는 때에 디지털증서는 효력을 상실함(제5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069조의2(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 신설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유언으로서 성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유언보관소 마련 및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 제도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은 디지털증서를 법원이 지정하는 전자유언보관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유언보관소에 대한 제출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면전에서 하거나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참여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전자유언보관소는 제출된 디지털증서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고 유언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함
- 다만,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지정할 전자유언보관소의 구체적인 요건을 알 수 없고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며,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박은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은비	02-6788-4831	ebpark@assembly.go.kr